

■ 공무원보수규정 [별표 12] <개정 2026. 2. 27.>

국립대학 교원 등의 봉급표(제5조 및 별표 1 관련)

(월지급액, 단위: 원)

호봉	봉급	호봉	봉급
1	2,379,500	21	4,681,500
2	2,454,300	22	4,825,500
3	2,529,700	23	5,013,100
4	2,604,500	24	5,200,300
5	2,679,900	25	5,387,500
6	2,762,500	26	5,574,300
7	2,844,900	27	5,761,100
8	2,927,700	28	5,948,000
9	3,051,900	29	6,090,300
10	3,176,100	30	6,232,600
11	3,300,500	31	6,374,700
12	3,424,200	32	6,516,900
13	3,547,700	33	6,659,200
14	3,671,200		
15	3,816,100		
16	3,960,900		
17	4,105,100		
18	4,249,300		
19	4,394,200		
20	4,537,600		

비고

- 국립대학 총장의 봉급은 학생의 정원(5천명을 기준으로 한다), 학교의 종류 등을 고려하여 매년 교육부장관과 인사혁신처장이 협의하여 정하되, 고정급으로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봉급을 지급한다. 다만, 제8조와 제9조에 따라 확정된 호봉의 봉급이 많은 경우에는 그 중 유리한 호봉을 적용한다.
 - 가. 국립목포해양대학교, 한국체육대학교, 한국전통문화대학교, 교육대학 총장: 9,447,300원
 - 나. 강원대학교, 경북대학교, 경상국립대학교, 국립공주대학교, 국립군산대학교, 국립금오공과대학교, 국립목포대학교, 국립부경대학교, 국립한밭대학교, 부산대학교, 서울과학기술대학교, 국립순천대학교, 국립경국대학교, 전남대학교, 전북대학교, 제주대학교, 국립창원대학교, 충남대학교, 충북대학교, 국립한국교통대학교, 국립한국해양대학교, 한국교원대학교, 한국방송통신대학교, 한국예술종합학교, 한경국립대학교 총장: 9,618,800원
- 교육부, 국가교육위원회, 국사편찬위원회, 중앙교육연수원, 국립국제교육원, 교원소청심사위원회, 국립특수교육원 및 대학교에 근무하는 장학관·교육연구관과 부교육감인 장학관의 봉급은 대학교원 봉급란의 해당 봉급으로 한다.
- 조교의 봉급은 해당 호봉의 봉급에서 143,700원을 뺀 금액으로 하되, 전문대학의 조교 중 별표 15 제6호에 따라 확정된 호봉이 없는 조교의 봉급은 1호봉에 해당하는 봉급에서 218,800원을 뺀 금액으로 한다.